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교역자 및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신학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추천한 임원(이사 11인과 감사 1인)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이사 4인과 감사 1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이사로 선임하며, 임기는 총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목사 또는 장로이어야 한다.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 수는 4인으로 한다.

- 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제24조의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추천한 7인으로 구성한다.
-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1/3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 ⑥ 제⑤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

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5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3(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인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의4(평의원의 위촉) ① 교내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직원회의에서 추천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총학생회 및 총원우회에서 추천한다.

제35조의5(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7(평의원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학 제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8(운영규정) 평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업
2. 농림업
3. 강원도 철원군 소재의 이 법인 소유농토의 경작
4.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사업

제37조(관리인) ① 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오엠에스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의결하되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지정하는 학교법인이나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0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41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 여

정관 제47조로 정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외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학교의 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④ 삭제
-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는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⑥ 대학의 보직자(처·실장이상)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의 2(임시교원) 삭 제

- 제41조의3(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대학의 교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의 4(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

- 제41조의5(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41조의6(겸임교원 등)** ① 제41조 제2항의 교원이외에 겸임교원 등을 필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 ② 겸임교원 등의 자격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 제42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

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자녀(만 8세 이하로서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 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②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2조의2(연구년) ① 본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급에서 근속한 교원은 3년에 6개월, 6년에 1년간 연구년을 허락한다. 다만, 본 대학교 최초 임용자는 6년경과 후 연구년을 허락한다.

② 연구년에 따른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43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2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2조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2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7. 제4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2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5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2조 제2호내지 제10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직위해제)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에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한다.

제46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의 2(명예퇴직수당)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임면 제청에 관한 사항.
 2.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와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1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의 인사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외에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인, 도합 7인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의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6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6인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5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 삭 제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1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인 학교법인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이사장은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4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4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65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제80조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제81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2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3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7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기획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주사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제88조(총장 등) ① 서울신학대학교에 총장과 부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동의권을 얻어 보한다. 부총장은 신학대학원장을 겸한다.

④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9조(대학원장) ① 서울신학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단, 특수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제90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역처,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평가지원실, 대외협력실을 둔다.

② 교역처에는 교목실과 생활관을 두며, 처장 1인, 교목(목사, 전도사), 생활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처장은 목사로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생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보한다.

③ 교무처에는 교무과를 두며 처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주사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④ 학생처에는 학생과와 학생 종합서비스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여교원 중에서, 각 센터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보하고 과장은 주사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보한다.

⑤ 총무처에는 총무과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각 과장은 주사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 기획처에는 기획과와 전산과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전산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보하며, 과장은 주사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⑦ 입학처에는 입학과와 홍보과를 두고,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과장은 주사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⑧ 평가지원실의 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보한다.

⑨ 대외협력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보한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의 2(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91조(부속시설)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의 임명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사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1급 정사서로 사서직원 중에서 보하며 과장은 주사급 이상의 사서직원으로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의2(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경력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창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혁신원에 원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각 센터에는 소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교육혁신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센터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93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94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9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6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오 영 필

이 사 배 문 준, 남 영 호, 김 희 택, 에베렛트 헌트, 제이.엘마 길보른

감 사 제이비 크라우스, 김 중 환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의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41조 1항은 이 정관에 의해 선임된 총장부터 적용한다.

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임용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 중 교수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이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11일부터 시행 한다.
2. (총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총장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교수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중 정년보장교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대행 81422-1226(2000.7.27)호로 인가】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교 수 : 정년
나. 부 교 수 : 7년
다. 조 교 수 : 4년

라. 전임강사 : 2년

마. 조 교 : 1년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41조제6항에 의한 보직자 중 대학 원장, 총무처장의 임기 적용은 201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0조(하부조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0조(하부조직)는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총장의 임기) 총장의 임기는 본 개정정관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의 5의 추천위원회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1조(인사위원회 조직) 제1항, 제88조(총장 등) 제1,3,4항은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총장의 임기) 총장의 임기는 본 개정정관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인 사 무 조 직 정 원

총 계	7명
일 반 직 계	7명
2급 (참 여)	1명
5급 (부 참 사)	1명
6급 (주 사)	1명
7급 (부 주 사)	1명
8급 (서 기)	2명
9급 (부 서 기)	1명

(별표 2)

학 교 사 무 조 직 정 원

총 계	70명
일 반 직 계	56명
2급 (참 여)	2명
3급 (부 참 여)	3명
4급 (참 사)	5명
5급 (부 참 사)	12명
6급 (주 사)	17명
7급 (부 주 사)	8명
8급 (서 기)	6명
9급 (부 서 기)	3명
기 능 직 계	14명
5등급	2명
경비원,교환원,원동기기사,목공기사,전기기사,정보처리사	
6등급	4명
경비원,교환원,원동기기사,목공기사,전기기사,정보처리사	

7등급	3명
경비원,교환원,원동기기사,목공기사,전기기사,정보처리사,운전기사	
8등급	3명
경비원,교환원,원동기기사,목공기사,전기기사,정보처리사,운전기사	
9등급	2명
경비원보,교환원보,원동기기사보,목공기사보,전기기사보, 정보처리기사보	